

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문

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7년 03월 02일까지 검단출장소에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대부계약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변상금(대부료의 120%)이 부과됩니다.

○ 공고대상자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비 고
전**	전** 62.04.15(여)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	

○ 공고기간 : 2017.02.16. ~ 2015.03.02. (15일간)

※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.

※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(대부료의 120%)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윤현진 / 문의전화 : 032-560-3203)

2017년 02월 16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

